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목 차

제1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3
○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제2장 이용계약.....	4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제3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6
제4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7
별 첨1.....	8

제1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제1조 (이용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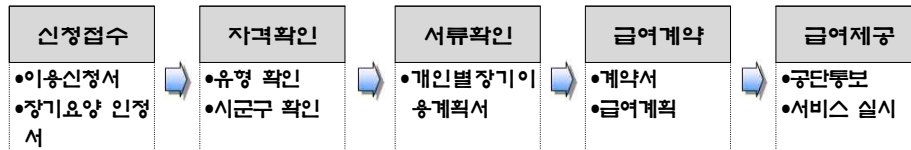
기관의 수급자 정원은 [희망이음 수급자 등록현황]에 있으며,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제2조 (이용대상)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 (이하 “수급자”라 한다)
2.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제3조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서를 접수하면 기관은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표 2] 이용절차

제4조 (홍보)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수급자를 모집한다.

수급자	홍보방법
온라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BLOG
오프라인	홍보지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기타	수급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 직접홍보
급여종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제도홍보와 사용절차 안내

[표 3] 모집방법

제2장 이용계약

제5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과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시작일 이전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수가변경계약 또는 재계약을 하거나 기관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중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계약이 종료된다.

제6조 (계약 목적)

1.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기관과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7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법 40조 본인부담금」 및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부담하며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비급여비용에 따른다.
2.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별첨2]를 참고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외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수급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가 정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9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루인) 외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보유질병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0조 (계약해제)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직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7. 본인부담금을 고의적으로 여러 번 지체하고, 지불의사가 없을 경우
8.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9.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3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제11조 (이용료)

1.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관리책임자)이 정한다.
2.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4.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5. 등급외자 이용료는 시설장이 정한다.
6. 불가피하게 장기요양급여 한도를 초과하여 이용한자는 수급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시설장이 정한다.

제1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1.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 기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문자나 서면으로 안내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①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②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한다.
 - ②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거나 필요시 재계약 한다.
 -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 ④ 비급여 비용은 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이 정한다.

제4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3조(서비스)

1. 수급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특속** :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수급자 집으로 가정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서비스 내용)

1.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급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① 신체활동지원
 - ② 일상생활지원
 - ③ 정서지원
 - ④ 인지활동지원
 - ⑤ 여가활동지원
 - ⑥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3. 수급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5조(이용료 부담)

1. 수급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표준계약서에 작성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이용료 청구 시 문자 또는 서면으로 청구를 한다.
3.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2026년 급여 수가 안내 [별첨1]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2026년 1월 기준〉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인지지원
시설 급여	노인요양시설	일반형	93,070	86,340	81,540	81,540	81,540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일반형	74,590	69,210	63,800	63,800	63,800
재가 급여	재가급여 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복지용구 연 한도액		1,600,000				
	단기보호(1일당)		74,060	68,580	63,350	61,680	60,000
	주·야간보호 (1일당)	라-1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41,820	38,720	35,740	34,120	32,490
		라-2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6,060	51,930	47,940	46,300	44,650
		라-3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9,730	64,590	59,640	58,010	56,360
		라-4 10시간 이상 ~ 13시간 미만	76,820	71,160	65,750	64,090	56,360
		라-5 13시간 초과	82,370	76,310	70,500	68,860	56,360
	방문요양 (방문당)	가-1 30분 이상	17,450원				
		가-2 60분 이상	25,320원				
		가-3 90분 이상	34,120원				
		가-4 120분 이상	43,430원				
		가-5 150분 이상	50,640원				
		가-6 180분 이상	57,020원				
		가-7 210분 이상	63,530원				
		가-8 240분 이상	70,080원				
	방문간호 (방문당)	다-1 30분 미만	42,880원				
		다-2 30분 이상 ~ 60분 미만	53,770원				
		다-3 60분 이상	64,690원				
	방문목욕 (방문당)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자정내 목욕)	88,990원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자정내 목욕)	80,230원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원				